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핵심(요약)설명서

원본손실 가능상품	본 설명서는 신탁 계약을 하려는 고객에게 신탁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고객이 신탁 계약을 시작하기 전에 거래의 위험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하는 자료입니다. [주의] 본 상품에 대해 고객님의께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신탁형 ISA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와 맺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명칭을 가진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지정형(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한 특정금전신탁)으로만 운용. 예금, 예탁금, 펀드(ETF포함), 파생결합증권(ELS/DLS/ELB/DLB/ETN), RP, 상장형 수익증권, 리츠 등이 거래 가능함
중개형 ISA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명칭을 가진 위탁매매계좌 또는 매매계좌로서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한 방식으로 운용. 국내상장주식, 예탁금, 펀드(ETF포함), 파생결합증권(ELS/DLS/ELB/DLB/ETN), RP, 상장형 수익증권, 리츠 등이 거래가능 함

■ 고객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사항 [민원 우려로 속지 필요사항]

발생가능한 불이익	①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② 본 상품의 최대 손실 위험은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품위험등급 6등급 매우낮은 위험	① 투자위험등급 : 6등급 (매우낮은위험) ② 위험등급의 의미 : 당사는 투자위험등급을 1등급(매우높은위험)에서 6등급(매우낮은위험)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본 상품의 경우, 여러 투자자산의 편입이 가능하며 당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위험등급을 초저위험으로 간주합니다. ③ 위험등급 유의사항 : 6등급(매우낮은위험)의 경우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의 손실을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그러나 본 상품은 편입할 유가증권의 개별위험등급에 따라 적합한 투자자 유형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표를 참고하여, 개별 상품 편입 시 고객님의 투자성향과 일치하는 적합한 위험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유동성위험] <table><tr><td>중도해지 불가</td><td>중도해지시 비용발생</td><td>중도해지 허용</td></tr><tr><td></td><td>0</td><td></td></tr></table>	중도해지 불가	중도해지시 비용발생	중도해지 허용		0	
중도해지 불가	중도해지시 비용발생	중도해지 허용					
	0						
유의사항	① 본 계약은 특정금전신탁으로 투자자의 운용지시에 의해 운용되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운용 방법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② 투자자가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서명, 전자서명, 기명날인, 녹취 자필기재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③ 특히,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성향보다 높은 위험도의 상품으로 변경 지시하는 경우에는 운용 방법을 반드시 자필로 기재 하셔야 합니다. ④ ELS, DLS(ELB, DLB 제외)으로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에 적합하더라도 운용방법을 반드시 자필로 기재 하셔야 합니다. ⑤ (설명서교부)신탁업자는 투자자의 운용지시 변경 시, 서면 등(전자문서포함)의 방법으로 변경되는 종목의 설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단, 본 계약 내에서 운용 시 설명서상의 서비스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종합자산관리신탁의 만기와 편입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도해지 (상환)수수료 발생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용지시 전 편입 금융투자상품의 만기 및 중도해지수수료 등을 확인 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 민원	고객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당사 영업점·고객센터 (TEL: 1588-6800)·홈페이지(https://securities.miraeasset.com) 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설명서

투자위험등급 :
6등급
[매우낮은위험]

미래에셋증권(주)은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높은위험)에서 6등급(매우낮은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단, **그 외 금융상품의 경우 원금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신중하게 투자결정을 하여야 하며, 투자로 인한 손실 발생시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투자자 (_____ : 자필기입) **는(은) 위의 사실을 숙지하고 자발적 의사에 따라 투자합니다. [자필서명]**

□ 알기 쉬운 위험 아이콘



※ 위 아이콘은 상품의 주요 위험만 나타낸 것으로 전체 위험은 반드시 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개요

신탁계약명	미래에셋증권 ISA신탁 (지정형 특정금전신탁)
투자방법	거치식, 적립식
최저가입금액	1만원 이상 (권장가입금액 : 거치식 100만원이상, 적립식 10만원이상)
계약기간	3년이상 계약자 자율지정
개발부서및개발담당자	미래에셋증권 신탁운용팀 선임매니저 이난주 (1588-6800)

2 가입요건

구분	19세 이상 거주자		15세~19세 미만 거주자		농어민
대상	일반형	서민형	일반형	서민형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	근로소득 5천만원 ·종합소득 3천8백만 원 이하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자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닐 것				

		※ 서민형 소득 기준연도 - (상반기) 가입신청일, 연장신청일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적용 - (하반기) 가입신청일, 연장신청일 직전년도 소득 확인 시 전년도 소득적용 ※ 상반기 가입신청, 연장신청 시 하반기에 직전년도 소득 확인과 연관 없이 전전년도 소득이 적용됩니다. ※ 서민형 가입 후 만기연장 시 일반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만기연장 후의 유형으로 세제혜택 적용됩니다				
가입 서류		실명확인증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농업인확인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 기간은 지급 확인서 사용 가능				
비 과 세 한 도	비과세 한도	200만원	400만원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분리 과세	※ 비과세한도 초과분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손익 통산	※ 계약만기 종료 시 각 금융상품 별 과표(- 과표포함)를 이연하여 합산 (계약만기종료 특별해지 포함) ※ 비과세 한도 적용 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으로 적용하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분리과세 소득세액 만큼을 한도로 공제 가능 [2025.07.01부터 시행]) ※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둘 이상의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 원천 징수세율은 14% 로 적용됩니다				
세제혜택 적용 예외		※ 특별 해지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 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 만기시점 또는 특별해지시점에 보유자산 모두 환매 또는 매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가입기간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기		개별 계약에 따름				
의무 보유기간		3년				
가입부적격		국세청이 가입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해당 저축취급기간에 알려야 합니다.				
만기연장		계약 만기일 3개월 전부터 만기전일까지 가능합니다.				

3 투자 대상

상품위험 구분			매우높은위험(1등급)	높은위험(2등급)	다소높은위험(3등급)	보통위험(4등급)	낮은위험(5등급)	매우낮은위험(6등급)
DC, IRP, ISA편입예금 등 예금자보호대상 상품, 현금성 자산			예금 등 예금자보호 대상상품, 현금성자산					
ELS, DLS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 20% 초과형	원금의 80% 이상 지급형	원금의 90% 이상 지급형	원금의 95% 이상 지급형	
신용연계 DLS	국내		준거채무 BBBO 이하	준거채무 BBB+	준거채무 A- 이상			
	해외	S&P, 피치	준거채무 B+ 이하	준거채무 BB- ~ BB+	준거채무 BBB- 이상			
		무디스	준거채무 B1 이하	준거채무 Ba3 ~ Ba1	준거채무 Baa3 이상			
파생결합사채	ELB, DLB		발행 금융회사의 신용등급에 대응하는 채권의 위험등급 준용					
ETN			일반 ETN	손실제한 ETN				
ETF	국내		운용사 표기					
	해외		1등급					
집합투자기구			운용사 표기					
			매우높은위험(1등급)	높은위험(2등급)	다소높은위험(3등급)	보통위험(4등급)	낮은위험(5등급)	매우낮은위험(6등급)
투자자구분			성장형	성장추구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금융상품 위험도 분류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운용방법 및 운용제한

- 본 계약은 특정금전신탁으로 투자자의 운용지시에 의해 운용되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운용 방법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 투자자가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서명, 전자서명, 기명날인, 녹취 자필기재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특히,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성향보다 높은 위험도의 상품으로 변경지시 하는 경우에는 운용방법을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ELS, DLS(ELB, DLB 제외)으로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에 적합하더라도 운용방법을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설명서교부)신탁업자는 투자자의 운용지시 변경시, 서면 등(전자문서포함)의 방법으로 변경되는 종목의 설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단, 본 계약 내에서 운용 시 설명서상의 서비스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종합자산관리신탁의 만기와 편입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도해지(상환) 수수료 발생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용지시 전 편입 금융투자상품의 만기 및 중도해지수수료 등을 확인 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5 납입한도 및 계약해지

- 납입한도: 총 1억원 이하로 연 납입한도는 2천만원이며 미납입한도는 다음 산식에 따라 다음연도 이월 가능
- ※ 단, 소득공제장기펀드(연 600만원 한도) 및 재형저축(분기 300만원 한도)의 가입자는 해당 가입금액만큼 차감하여 가입 가능

- 2천만원 X [1 + 가입 후 경과연수(4년 이상인 경우 4년)] - 누적납입금액

- 중도인출: 가능 (납입원본 한도 내. 단 인출일 현재까지 쌓인 과세액 및 미징수보수 제외)
중도인출 시 중도인출 한도는 재생성 되지 않으며 잔여한도 만큼만 입금 가능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인출 시 인출가능금액에서 해지 시 납부예상 세액만큼 인출 제어됩니다. 계약일로부터 3년이내는 일반과세 세율로 적용되며, 3년 초과시에는 비과세한도 적용 후 분리과세 세율로 적용됩니다.
- **중도해지: 가능.** 중도 해지 시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의무기간 내에 특별해지 사유가 아닌 경우의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며, 원천징수 기간 내에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추징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특별해지:** 특별해지 사유로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하는 경우 세제혜택 및 손익통산 유지.
* 특별해지 사유: ① 가입자의 사망, ② 해외이주, ③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 등
- 법령에 의한 해지: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계좌가 해지되며,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만기종료:**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좌 내 모든 재산을 매도 또는 환매하여 손익통산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를 한 후에 계약을 종료하여야 함. 만기종료 이후 기존 계좌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 특전금전신탁으로 전환하여 유지할 수 있으나, 일반과세로 전환되어 손익통산 및 세제혜택 불가함

6 신탁보수

- 기본 보수 : 신탁보수 = 신탁원본평균잔액 × 연 0.20% (후취, 매년 2월 마지막 영업일)
*참고: 펀드 편입 시 펀드 보수 별도
- ※ 신탁원본평균잔액이라 함은 일별 신탁원본을 신탁기간(일수)동안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신탁기간(일수)으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보유 현금이 징수 기본보수보다 적은 경우 차기 년도로 이월됩니다

7 업무처리 가능시간

- 16시 이전까지의 입금분에 한해 업무처리 가능하며, 16시 이후 입금분은 익일 처리됩니다.

8 단순구조 상품 설명

- 원금손실 위험 투자자 자기 책임원칙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단, 그 외 금융상품의 경우 원금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최대손실 위험 : 본 금전신탁은 운용지시에 따른 편입자산에 따라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ETF	○ 특징: 특정 지수 또는 자산을 추종하도록 설계된 펀드로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상품 ○ 위험 1. ETF는 시장거래 상품으로 시장의 시세변동에 따라 시가평가되므로,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 위험에 노출됩니다. 매도시 시장가격에 따라 매매차익 또는 매매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2. ETF는 보유자산의 시장매각 및 회수 불가사유 발생 또는 유가증권시장 등의 폐쇄, 정지, 휴장,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출금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자산을 현상대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3. ETF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

ETN	○ 특징: 증권회사의 신용으로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으로서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다양하며, 만기가 존재합니다. ○ 위험 1. 만기이전에 ETN을 발행한 증권회사에 부도, 파산등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ETN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중목정보 등을 통해 상품 구조, 기초자산, 기초지수의 과거가격 추이 등을 정확히 이해. 확인한 후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3. ETN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레버리지 ETF·ETN투자 시 사전교육이수 및 기본예탁금 거치 의무 준수 필요	
RP	○ 특징: 일정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미래에셋증권이 되사는 환매조건부 채권으로, 주로 국공채 등에 투자됩니다. ○ 위험 1. 향후 시장상황 및 금리변동 등에 의해 RP수익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RP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투자의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3. 만기일 이전 중도환매 할 경우 당초 약정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로 지급됩니다. 4. RP에 대한 담보유가증권은 금융투자업 규정에서 정하는 신용평가등급이 충족하는 경우 미래에셋증권은 임의로 종목교체(BBB→AA, AA→A)를 합니다. 5. 미래에셋증권은 RP 운용채권(매수채권) 보관·관리 합니다.
예금/적금	○ 특징: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은행)에 돈을 맡기고 일정한 이자를 수취하는 상품입니다. ○ 위험 1. 예금/적금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해당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2. 투자대상예금 발행은행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 악화에 따라 파산이 발생할 경우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3.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해지시 은행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으로써 이자금액이 계약시 약정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4. 자동 재 예치: 별도 운용지시가 없는 한 직전 정기예금과 동일한 조건(단, 만기지급이율은 제외되며 자동 재예치 시점의 이율로 적용)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됩니다. 단, 정기예금 만기 전에 신탁계약 만기 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형) 약관에 따라 중도해지가 될 수 있으며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테이블의 단순구조 상품 이외에 투자자가 금융상품 운용지시시 신탁업자는 해당 상품의 설명서 등을 교부 하오니 투자자는 투자 전 반드시 설명서 등을 읽어보시고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투자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9 유동성 위험

- 본 신탁 상품 중도해지 시 개별 투자자산의 유동성부족 혹은 기타사유에 따라 환금에 제약이 발생하여 투자 자산의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본 신탁 중도해지 시 신탁에 대한 중도해지 비용 및 편입한 개별 투자자산에 따른 중도환매/해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특정금전신탁 설명

□ 특정금전신탁의 개념

- 투자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미래에셋증권(이하 '수탁자'라 한다)과의 특별한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금전을 수탁자에게 맡기고,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 방법에 따라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재산인 금전을 운용·관리·처분 등을 하는 계약입니다.

□ 특정금전신탁계약 안내사항

- 위탁자는 운용방법을 변경 지정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탁자는 수탁자가 정한 소정양식에 따라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 지정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방법 변경 및 계약의 해지 제한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운용방법 변경 지정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수탁자는 매 분기 1회 이상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정기적으로 통보합니다.

수탁자는 매 분기말 기준으로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수탁자가 정한 소정양식에 따라 위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운용내역 수령을 원하지 않아 신탁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기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운용내역 통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는 본인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신탁업자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탁업자 임직원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신탁목적 달성을 위해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수탁자는 특정금전신탁재산의 운용내역(운용종목 및 비중 등) 및 평가금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는 본인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내역 및 신탁재산의 평가금액을 인터넷 등의 전산매체, 영업점 직접방문 등 다양한 방법의 조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용어설명

위탁자 및 수익자	-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맡기는 자입니다. - 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원본 또는 신탁이익을 수령하는 자입니다. - 위탁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위탁자가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자 본인이 수익자가 됩니다.
신탁기간	- 신탁기간은 특정금전신탁계약서(특정금전신탁 추가약정서 및 신탁 계약세부내역서 포함, 이하 같다)에서 정합니다. - 위탁자는 신탁기간 만료 전에 수탁자의 승낙을 받아 신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탁금액	- 신탁금액은 특정금전신탁계약서에서 정합니다.
신탁보수	- 신탁보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서에서 정합니다. 특정금전신탁계약서 특약에서 별도로 정할 경우 그에 따릅니다. -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 등의 대가로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교부	- 위탁자는 특정금전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탁재산 운용	-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별 신탁재산을 각각 구분하여 관리·운용 및 계산하는 상품으로 위탁자별 운용방법, 신탁기간, 신탁보수 및 이익계산방법 등은 특정금전신탁계약서에서 정합니다.
이익계산 및 지급	- 이익계산 및 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 특정이자지급식, 이익원가식, 원본산입식 중에서 선택하여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운용자산의 종류에 따라 이익계산 및 지급방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적배당	- 신탁재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의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에서 제비용(신탁보수 등)을 차감한 나머지가 수익자에게 전부 귀속 됩니다. - 특정금전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실적배당형 상품이어서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재산의 운용 결과 신탁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는 해당 신탁원금을 보전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신탁해지	- 수익자는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최종계산서를 수령하여 최종계산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위탁자가 신탁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환가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되, 신탁재산 중 환가(회수)가 곤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실물 등 운용현상 그대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신탁 재산의 보관, 관리 및 추심행위를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위탁자는 운용중인 신탁재산의 회수가 가능하고 수탁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신탁계약을 일부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신탁계약 해지(일부해지 포함) 과정에서 관계법령등에서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신탁 재산 상호간 자전 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 위탁자는 신탁기간 종료 전에 신탁해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중도해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운용중인 신탁재산의 종류에 따라 중도해지가 제한될 수 있으며, 중도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신탁 재산의 처분과정에서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도해지 시에는

	수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양도 및 담보 제공	- 위탁자는 특정금전신탁의 수익권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경우 사전에 수탁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운용중인 신탁재산의 종류에 따라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이 불가능 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운용 결과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직접 신탁재산을 투자한 것으로 보아 각 소득의 발생원천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 징수 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매분기말(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신탁해지일 또는 이익지급일(원본가산일 포함) 3. 기타 세법에서 정한 시기
분리과세	- 채권의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채권에 운용하는 경우, 신탁기간에 관계 없이 「소득세법」제129조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위탁자는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에도 신탁재산의 운용 과정에서 일부 종합과세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상기 신탁상품은 위탁자가 특정금전신탁계약서에서 지정한 운용 방법 및 세부운용지시대로 운용합니다. - 다만, 운용할 수 없는 잔액과 신탁기간이 종료된 후 신탁기간의 연장 또는 신탁금의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과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합니다. -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의결권이 있는 증권에 대한 권리는 신탁업자가 행사합니다.

※ 본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